

【총학생회 회칙】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회칙은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대학원생 상호간의 친목과 협동을 도모하고, 대학원의 이념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는 주된 사무소를 대학원에 두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대학원에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활동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수료, 퇴학, 미등록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된 회비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상부상조를 위한 제반활동 ② 학술, 연구증진을 위한 제반활동 ③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 ④ 해외 연수에 관한 활동 ⑤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장 조 직	
제6조(회장)	① 본회에는 회장1인을 둔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잔여임기를 자동 승계한다. ④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서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대의원 3인 이상의 추천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임기 개시 2개월 전에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된다.
제7조(부회장)	① 본회에는 1인의 부회장을 둔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감사)	① 본회에는 감사1인을 둔다. ② 감사는 전 회장이 담당하며, 회계 및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감사한다. ③ 감사는 종강 이후 한 달 안에 감사를 받는다.
제9조(대의원)	① 본회에는 총학생회 임원과 각 과별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본회에는 각 과별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집행부서)	① 본회에는 총학생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총무국, 대외협력국, 사무국, 홍보국,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를 두며 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각국에는 필요에 따라 부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총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1. 연도별, 학기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회비수납,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명부작성 및 문서수발 관리에 관한 사항 5. 회의록 작성유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와 관련된 일반 행정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③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1. 학술세미나, 연구발표회 등의 주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본회, 회보,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3. 도서 및 자료 수집, 보관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 회원의 학술 활동과 관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홍보국장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1. 본회에서 주관, 지원하는 각종 행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경조사 등 친목 도모에 관련된 사업의 주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본회와 관련된 사업의 대외, 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필요에 따라 임신, 출산으로 불가피하게 휴학하는 임원의 경우 봉사직으로 둘 수 있다. 봉사직에서 임원진으로 복귀 시 임원진의 권한이 부여된다.
제11조 (대의원회)	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및 제9조에 의한 각 과별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의 세부사항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연도별, 학기별 사업계획 및 예,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③ 회장 선출과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본회 사업과 관련된 긴급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제13조	① 회장 임기는 6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대의원, 부장, 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임기 중간에 임원진의 국장이 평가할 수 있다. 임원진의 임기 ③ 모든 직책에 있어 임원 회의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연임할 수 있다. 회의 미참석자는 결과에 응해야한다. 다만 연임 시 새로운 각 직책별 지원자가 없을 시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대의원 및 임원의 보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의 세부사항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연도별, 학기별 사업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③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제 3장 회 의	
제15조(총회)	①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 1/3이상이나 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총회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② 주요 사업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제17조 (회의의결)	본회의 회의는 재직인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장	제1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총 학생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계기

재정	간) 본회의 회계기간은 1학기로 한다. 제20조(재정의 관리) 본회의 재정의 총무국장 소관 하에 회장이 관리한다. 제21조(경조사비) 입회비를 납입한 회원 중 재학중일 때만 한하여 본인 결혼, 사망시 10만 원경조금을 지급한다.
제 5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22조(설치) 본회에서 실시하는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3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매 선거때마다 선거일 2주전까지 대의원에서 선출한 4인과 총학생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이 된다. 제24조(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의 선거사무를 관장하고 선거일 10일 전에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6장 포상 및 징계	제 25조 (포상) 원우회 발전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외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원우에게 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원우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 26조 (징계 사유 및 관할)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화합을 해치는 원우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 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②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③ 본회의 원우로서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된 때 - 임원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원에 대하여는 안건 상정에 따라 임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직위를 박탈하거나 차기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 임원 회의 의무는 활동 3회 이상 개인 사유로 인한 결석 시 즉시 제명한다. - 임원 회의 의무 활동 지각에 대한 기준은 정각-30분 까지 지각 1회, 2회시 결석 1회 처리, 30분 이상시 결석처리, 활동 스케줄이 조기 마감시, 미참석으로 인한 불참 처리 한다. - 해외교육봉사 미참여시 결석 2회 처리한다. - 원우회 의무 활동 시, 국별 업무에 대한 국장 업무 지시 건에 대한 부장의 미참여는 지각 1회 처리한다.(회부총 동일 적용) - 병가 시 임원 활동 시간에 방문한 병원에서 치료 및 요양 임원이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경조 휴가일은 배우자 10일, 자녀 10일, 부모 6일, 배우자의 부모 5일, 조부모3일, 외조부모 3일, 형제자매 3일,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백숙부모 3일로 정한다. - 결혼 휴가는 본인 5일, 자녀 1일, 형제자매 1일,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로 정한다. - 당직 시에는 병가 시 사전에 타임원과 대체하여 원우회원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한다. 임원의 직위가 중도에 박탈될 경우, 해당 임원은 봉사장학금을 즉시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징계 사유, 의결 결과, 효력 발생일 등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존한다. 경고, 자격정지, 자격박탈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에 정식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부칙
-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개정한 날(2026. 2. 3.)로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 또는 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